의안번호	
의 뢰 인	안철수 의원
회 답 일	2025. 7. 17.
추계번호	25C3210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제4항 (난임극복 지원사업 신청 절차 변경)	•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검사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하고, 소급 지원 가능[1]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제4항 (난임극복 지원사업 신청 절차 변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난임극복 지원사업 신청 절차 변경(안 제11조제4항 신설)

○ 현행 난임극복 지원사업 중 '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'은 예비부모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, 검사희망자가 온라인 또는 보건소를 통해 <u>사전에 지원을 신청한 후</u>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검사를 받고, 이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[2]

- 보건복지부 「모자보건사업」의 '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'은 2025년에 20.1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7억 6,600만원 편성[3]

1) 제11조(난임・유산・사산 극복 지원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, 유산・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2) 보건복지부, 「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」

○ 개정안의 내용은 검사 희망자가 검사를 받고 일정한 기간 내에 지원을 신청하고,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추후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신청 절차를 변경하는 것임

○ 개정안에 따라 '검사 후 신청'으로 절차를 변경하면 개정안의 제안이유[4]에서도 서술한 것과 같이 신청 인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확대될 신청자 수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므로 지원 규모를 알 수 없음

❑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박선아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741	sunapark@nabo.go.kr

3) 해당 예산은 지자체경상보조 사업으로 평균국비보조율 46%(서울 30%, 그 외 50%)임

4)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.6.24. 보도자료("임신 예비 부모를 위한 검사비 지원"…제대로 지원받도록 관련 절차 개선한다.)를 통해 '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'의 절차를 개선하고, 검사희망자가 검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권고함